

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[별표 14] <개정 2025. 4. 18.>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97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 인	5
	자 녀	1
출 산	배우자	20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)
입 양	본 인	20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3

비 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
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
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